

---

# 제1기 제11차 전국위원회

2026년 4월 12일(일) 오후 1시~  
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+ 온라인zoom회의

---

## 순서

---

13 : 00 ~

제11차 전국위원회 회의

# 회의 및 자료집 순서

성원보고

개회선언

서기, 진행요원 지정

회순통과

---

## 안건 사항

1. 2026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기본방침 결정의 건
2. <특별당규-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출 규정> 제정의 건
3. 2026년 지방선거 선거자금 지원 및 예산 승인의 건

---

## 보고 사항

1. 2026 지방선거 주요 일정(안)
2. 지방선거기획단 운영 보고
3. 2026년 1분기 사회민주당 중앙당 수입지출내역



## 전국위원 명단

구분	명단
당대표	한창민
부대표	정혜연
당 소속 국회의원	(한창민)
광역 시도당위원장	송치용 김진호 (최혜선) (정혜연) 박형규(*지역 가나다순)
사무총장	김보경
<hr/>	
권역	전국위원
강원(1)	조영진
경기인천(1)	서정범
대전충청세종(2)	이훈 최혜선
서울(2)	이병은 고석군
영남(2)	국민수 최영규
호남제주(1)	박봉리
지명직 전국위원(2)	강점석 박환수
<hr/>	
합계	17명

---

## 안건 사항

1. 2026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기본방침 결정의 건
2. <특별당규-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규정> 제정의 건
3. 2026년 지방선거 선거자금 지원 및 예산 승인의 건

---

## 보고 사항

1. 2026 지방선거 주요 일정(안)
  2. 지방선거기획단 운영 보고
  3. 2026년 1분기 사회민주당 중앙당 수입지출내역
-

# [안건 1] 2026년 지방선거 및 재·보궐선거 기본방침 결정의 건

[주문사항] 2026년 사회민주당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기본방침을 제출하오니 심의 후 의결해주시시오.

## 1. 관련규정

### [당헌]

제4장 전국위원회

제9조(지위와 구성)

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

10.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

11.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

## 2. 제안이유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(2026. 6. 3.) 및 2026년 재·보궐 선거에 따른 당의 목표, 출마·재정·조직·연대·공직후보자 선출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자 함.

## 3. 의결사항

### 1) 목표

- ① 당 조직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. (미창당 지역 창당과 창당 지역 조직 강화)
- ② 완전한 내란 종식과 정치개혁을 위해 개혁진보 진영과의 연대연합으로 최대 승리에 이바지한다.

### 2) 기본방침

#### (가) 출마방침

- ① 지역구 후보 : 당의 역량을 집중하여 당의 지방정치 비전과 새로운 진보정치의 노선을 선보일 수 있는 준비된 지역, 준비된 후보 1곳(남원시의회 의원선거)에 집중한다.
- ② 비례대표 후보 : 당의 모든 시·도당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 참여한다. 이를 통해 지역 시민들에게 당의 새로운 진보정치 비전을 선보이고 당 조직 강화의 토대를 구축한다.
- ③ 재·보궐 선거 참여는 연대연합의 정세 흐름과 요구에 따라 출마, 선거연대, 선거 지원 등

필요시 전국위원회가 별도 결정을 한다.

(나) 재정방침

- ① 중앙당은 선거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중앙당 차원의 당 홍보사업, 당 출마 후보 및 비례대표 선거 참여 시·도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.
- ② 선거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중앙당 일반회계 출연금, 국가선거보조금 등으로 한다.
- ③ 각급 선거 후보자, 선거 참여 시·도당은 중앙당 지원예산 외에 소속 당원의 특별당비,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별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운영한다.

(다) 조직방침

- ①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시·도당은 당원 및 연대단체 등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여 지방선거 이후 당 조직 강화 토대를 구축한다.
- ② 중앙당은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시·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.
- ③ 당 소속 의원실은 지방선거 전면 지원태세를 갖추고 중앙당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총력 지원한다.

(라) 연대 방침

- ① 완전한 내란 종식과 정치개혁을 위해 개혁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추진한다.
- ② 광역시·도당별 지방선거 연대는 광역 시·도당이 관할하고 중앙당이 승인한다.
- ③ 재·보궐 선거 연대는 중앙당이 관할하고 전국위원회가 승인한다.

(마) 공직후보자 선출 등에 관한 방침

- ① 출마방침에 따른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는 해당 광역 시·도당 운영위원회가 전원 전략 명부로 의결하고 2026 지방선거 당 목표에 부합하는 후보를 추천한다.
- ② 2026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 및 운영은 현재 당의 상황에 맞추어 통합하여 관할한다. 구체적인 내용은 <특별당규-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규정>에 따른다.

## [안건 2] <특별당규-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규정> 제정의 건

[주문사항] 2026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<특별당규-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규정>을 심의 후 의결해주시시오

### 1. 관련규정

[당헌]

제4장 전국위원회

제9조(지위와 구성)

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당규의 제정과 개정

### 2. 제안이유

- 현행 당규에 의하면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출, 심사 등을 각 광역시·도당에서 관할해야 하나, 각 시·도당의 상황을 고려하고 당의 통합을 높이기 위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.
- 현행 당규에 명시된 출마자 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아니함으로, 2026년 지방선거에 한 해 별도의 기본교육과 출마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.
- 현행 당규에 의하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로 되어 있으나, 현재 부산·인천광역시장의 창당 과정에서 입당한 당원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당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자, 특별당규를 통해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함.

### 3. 의결사항

#### 특별당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규정

[제정 2026. 4. 12.]

#### 제1장 총칙

##### 제1조(목적)

본 당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, 공직후보자 자격심사, 공직후보자 선출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당규이다.

##### 제2조(다른 당규와의 관계)

본 당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특별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고, 본 당규에 없으면 다른 당규에 따른다.

#### 제2장 공직후보자 심사

##### 제3조(통합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통합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(이하 '통합 후보심사위'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② 통합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·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.

##### 제4조(통합 후보심사위의 임기)

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종료한다.

##### 제5조(통합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)

- ① 통합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,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.
- ② 통합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·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고, 광역시·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보고를 거쳐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.

제6조(심사기준 등)

- ① 통합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, 정체성, 기여도,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.
- ② 통합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,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후보 자격심사 신청인이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심사 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단 회의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3장 선거권 등

제7조(선거권)

2026년 4월 10일까지 입당한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.

제8조(출마자 교육)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해 중앙당이 실시하는 후보자 기본교육 및 출마자 교육을 이수하면 공직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.

보칙

제9조 (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에 대한 특례)

본 당규 제정 당시 국가선관위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본 당규에 따른 통합 후보심사위 심사를 거친 경우 국가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당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제10조 (위임규정)

본 당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<2026. 4. 12. 제1호>

본 당규는 2026. 4. 12.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.

## [참고] 지방선거 관련 당헌·당규

### ※ 공직후보자 심사 관련

#### [당규] 제9호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

##### 제15조 (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·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(이하 '후보심사위'라 한다)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.
- ②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다.
- ③ 광역시·도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·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.

##### 제17조 (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)

-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, 광역단체장 선거,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.
- ② 광역시·도당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,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.
- ③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·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,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 집행위원회에, 광역시·도당 후보심사위는 광역시·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.
- ④ 당의 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,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.

##### 제18조 (심사기준 등)

-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, 정체성, 기여도,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, 광역시·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.
-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,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, 광역시·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

위원회, 광역시·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- ④ 본 조 제③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에서 한다.
- ⑤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본 조 제③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광역시·도당 후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.

## ※ 피선거권 관련 규정

### [당헌] 제8장 공직선거

제32조(영입인사 등 피선거권)

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과 관련해 영입인사와 참여당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,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시·도당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### [당규] 제1호(당원) 제4장 당원교육

제14조(당원교육)

- ④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교육연수원이 인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 단, 미이수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.  
2호. 공직 선거의 경우,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때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원은 관할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수서약서를 제출한 후, 전국위원회의 후보자 인준(공천) 전까지 교육이수가 확인되어야 한다.
- 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기본교육 외에도 교육연수원에서 지정한 출마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.

## ※ 선거권 관련 규정

### [당규] 제9호 선거관리규정

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

제23조 (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)

- ① 비례대표 광역시·도의원선거 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광역시·도당 소속 선거권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.
- ② 광역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략명부를 둘 수 있으며, 전체명부의 정수,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광역시·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7장 선거인명부

제25조 (선거인명부 작성)

-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로 한다.

※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

[당헌]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

제37조(선거관리위원회)

-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·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, 시·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.

## [안건 3] 2026년 지방선거 선거자금 지원 및 예산 승인의 건

[주문사항] 2026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기본방침에 따른 지방선거 특별회계 기본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후 의결해주시시오

### 1. 관련규정

[당헌]

제4장 전국위원회

제9조(지위와 구성)

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

6. 예산과 결산의 심의, 의결

### 2. 제안이유

2026 지방선거 및 재·보궐선거 재정방침에 따라 수입예산 6,5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아래 지출예산을 지방선거 특별회계로 승인하고자 함

### 3. 선거지원 예산안

#### 1) 수입예산

구분	금액	비고
일반회계 출연금	약 27,000,000원	경상수지 추정값 반영
국가선거보조금 예상액	약 38,000,000원	후보자 등록 후 확정
합계	약 65,000,000원	운영 여유분 반영

#### 2) 지출예산

구분	지원금액	비고
중앙당 홍보사업비	10,000,000원	사업계획에 따른 세부 예산안 추후제출
전략 지역구 후보지원금	10,000,000원	전북 남원시의회 선거 박형규 후보
광역비례 시·도당 지원	25,000,000원	5개 시·도당 각 500만원 지원 (미집행은 예비비로)
예비비	20,000,000원	
합 계	65,000,000원	

#### 4. 의결사항

- ① 2026년 지방선거 선거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총 65,000,000원 범위 내에서 지역구 후보 지원 10,000,000원, 중앙당 홍보사업비 10,000,000원, 광역비례 참여 시·도당 지원 25,000,000원 (5개 시·도당별 500만 원, 미집행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)을 승인함.
- ② 중앙당은 지원금을 총액으로 교부하며, 지원금의 집행은 각 시·도당이 「공직선거법」·「정치자금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국가선관위 회계 보고 의무를 진다.
- ③ 예비비 사용은 선거상황에 따라 선거기획단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, 선거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 대표단이 특별당비 등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.
- ④ 선거특별회계는 지역구 및 광역 시·도당 선거계획을 점검한 후 5월 2일 최종 승인한다.

**보고 1**

**2026 지방선거 주요 일정(안)**

일시	주체	일정·목적	주요 내용
4/12 (일)	전국위원회	2026 지방선거 목표, 방침 승인 및 특별당규 제정의 건	· 자격심사사위, 선거관리위 통합 구성 등 2026년 지방선거 관련 특별당규 제정 · 지방선거특별회계 (선거지원금) 승인
4/12 (일)	지방선거 준비 간담회	각 시도당 지선 준비를 위한 1차 간담회	· 예비 교육 형식의 간담회 · 각 시도당위원장 + 시도당 선본 실무 1인 필참
4/13~ 21	시도당 운영위	전략명부 방침, 명수, 후보 추천 등 의결	
4/13~ 21	자격심사위원회	후보 자격 심사 필요 요건 및 구비 서류 공고	· 3~5인으로 구성, 외부인사 포함 여부 논의. 구성안) 위원장: 천호선 / 위원: 박종현 고문석 송은자 · 입후보신청서, 이력서, 당비 납부확인서, 결격사유 자기확인서 등
4/22~ 26	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	후보자 심사	·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동시 진행 · 심사결과 본인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※ 당규 제9호 제18조 ③항: 심사결과 공지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 신청 가능
4/27~ 29	후보 선출 당원 투표	시도당별 후보자 선출 당원투표	· 중앙선관위 구성 필요 : 전교탁, 국민수 외 1인 필요 · 투표율과 득표율만 공개
5/2 (토)	전국위원회	지방선거 후보 인준 선대위원회 구성 인준	
5/2~3	중앙당	지방선거 워크숍	후보자 및 시도당 선거운동 (실무) 교육(1박 2일 예정)
5/14	후보 등록	공식 후보 등록	
5/21	선거운동 개시		*~5/20 정당 현수막 게첩 가능
6/3	지방선거 투표일		

※후보선출 당원 투표 前 : 후보자 자격심사 완료, 당 선관위 후보자 등록신청 완료

※전국위원회 후보 승인 前 : 후보선출 당원 투표 완료, 출마자 교육 이수 완료

※전국위원회 후보 인준 완료 후 국가 선관위 제출용 공직후보자추천서를 발급함

※ 지방선거기획단장 구두 보고

**보고 3**

**2026년 1분기 사회민주당 중앙당 수입지출내역**

○ 2026년도 중앙당 1분기 수입지출 결산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함.

**2026년도 1분기 결산 총괄표**

기간: 사회민주당 2026년도 1월 1일 ~ 3월 31일

예산과목	1월~3월				비고
	예산액(A)	집행액(B)	차감잔액(A-B)	집행율	
<b>수입</b>					
<b>[이월금]</b>		<b>34,907,445</b>			
<b>[당비]</b>	<b>32,500,000</b>	<b>67,282,094</b>	<b>(34,782,094)</b>	<b>207.0%</b>	
일반당비	20,000,000	18,082,094	1,917,906	90.4%	
특별당비	12,000,000	46,700,000	(34,700,000)	389.2%	대표 특별당비
직책당비	500,000	2,500,000	(2,000,000)	500.0%	보좌진 직책당비
<b>[기탁금]</b>	-	-	-		
<b>[후원금]</b>	<b>5,000,000</b>	-	<b>5,000,000</b>	<b>0.0%</b>	
<b>[보조금]</b>	<b>9,023,000</b>	<b>9,673,970</b>	<b>(650,970)</b>	<b>107.2%</b>	
정당보조금-경상보 조금	9,000,000	9,476,490	(476,490)	105.3%	
정당보조금-선관위 기탁금	23,000	197,480	(174,480)	858.6%	
비교섭단체 정책개 발비		-			
<b>[기타수입]</b>	-	<b>361,092</b>	<b>(361,092)</b>		
이자수입	-	4,792	(4,792)		
기타		356,300			
<b>수입합계</b>	<b>46,523,000</b>	<b>77,317,156</b>	<b>(30,794,156)</b>	<b>166.2%</b>	
<b>수입합계+이월금</b>	<b>46,523,000</b>	<b>112,224,601</b>	<b>(65,701,601)</b>	<b>241.2%</b>	
<b>지출</b>					
<b>[기본경비]</b>	<b>32,250,000</b>	<b>43,331,418</b>	<b>(11,081,418)</b>	<b>134.4%</b>	
<b>(인건비)</b>	<b>25,000,000</b>	<b>33,592,055</b>	<b>(8,592,055)</b>	<b>134.4%</b>	
상근자급여	10,500,000	22,954,721	(12,454,721)	218.6%	원천징수 세금 및 사회보 험료 포함(3월분 원천징수 307,560원은 4월 납부로 2 분기 계상), 임명희 부대표 퇴직금 포함
비상근자급여	10,500,000	10,153,334	346,666	96.7%	원천징수 세금 포함(3월분 원천징수 15,000원은 4월 납부로 2분기 계상)

단기용역인건비	-	484,000	(484,000)		원천징수 세금 포함(3월분 원천징수 15,000원은 4월 납부로 2분기 계상)
세금	4,000,000	-	4,000,000	0.0%	원천징수 세금 및 사회보 험료를 급여총액에 포함하 여 표시
복리후생비	-	-	-		
<b>(비품및소모품비)</b>	<b>650,000</b>	<b>1,451,920</b>	<b>(801,920)</b>	<b>223.4%</b>	
비품구입비	500,000	-	500,000	0.0%	
소모품비	150,000	1,451,920	(1,301,920)	967.9%	창당 및 선거용 물품 제작
<b>(사무소설치운영비)</b>	<b>5,900,000</b>	<b>7,352,153</b>	<b>(1,452,153)</b>	<b>124.6%</b>	
사무실 보증금	-	-	-		
임차료+관리비	3,400,000	3,610,260	(210,260)	106.2%	
관리유지비	2,500,000	3,741,893	(1,241,893)	149.7%	회계 감사비용 포함
차량유지비	-	-	-		
<b>(공공요금)</b>	<b>700,000</b>	<b>935,290</b>	<b>(235,290)</b>	<b>133.6%</b>	
통신요금	270,000	260,900	9,100	96.6%	
우편/운송료	30,000	238,950	(208,950)	796.5%	선관위 보고 등
당비자동이체수수료	400,000	435,440	(35,440)	108.9%	
<b>[정치활동비]</b>	<b>13,100,000</b>	<b>17,360,550</b>	<b>(4,260,550)</b>	<b>132.5%</b>	
<b>(정책개발비)</b>	<b>2,700,000</b>	<b>-</b>	<b>2,700,000</b>	<b>0.0%</b>	
연구소지원금	2,700,000	-	2,700,000	0.0%	
정책개발비	-	-	-		
연구용역비	-	-	-		
<b>(교육훈련비)</b>	<b>-</b>	<b>-</b>	<b>-</b>	<b>0.0%</b>	
교육사업비	-	-	-		
<b>(조직활동비)</b>	<b>1,600,000</b>	<b>8,035,150</b>	<b>(6,435,150)</b>	<b>502.2%</b>	
회의비(간담회)	500,000	-	500,000	0.0%	
출장비	100,000	1,073,600	(973,600)	1073.6%	창당 관련
업무지도비	-	-	-		
연대사업비	-	500,100	(500,100)		
조직사업비-당원소통	-	-	-		
조직사업비-정당현수막	1,000,000	6,461,450	(5,461,450)	646.1%	
당내선거비용	-	-	-		
<b>(홍보비)</b>	<b>100,000</b>	<b>-</b>	<b>100,000</b>	<b>0.0%</b>	
<b>(여성정치발전비)</b>	<b>1,850,000</b>	<b>-</b>	<b>1,850,000</b>	<b>0.0%</b>	

기본경비	-				
정책개발비	1,850,000	-	1,850,000	0.0%	
총선지원금	-				
조직활동비	-				
<b>(청년정치발전비)</b>	<b>1,850,000</b>	<b>-</b>	<b>1,850,000</b>	<b>0.0%</b>	
기본경비	-				
정책개발비	-	-	-		
총선지원금	-				
조직활동비	1,850,000				
<b>(지원금)</b>	<b>5,000,000</b>	<b>9,121,500</b>	<b>(4,121,500)</b>	<b>182.4%</b>	
지역교부금	5,000,000	9,121,500	(4,121,500)	182.4%	
지역교부금외	-	-	-		
<b>(기타)</b>	<b>-</b>	<b>203,900</b>	<b>(203,900)</b>		
기타		203,900			
<b>[퇴직적립금]</b>	<b>5,000,000</b>	<b>-</b>	<b>5,000,000</b>	<b>0.0%</b>	
<b>[예비비]</b>	<b>-</b>	<b>-</b>	<b>-</b>		
<b>지출합계</b>	<b>45,350,000</b>	<b>60,691,968</b>	<b>(15,341,968)</b>	<b>133.8%</b>	
<b>잔액</b>	<b>-</b>	<b>51,532,633</b>			*잔액은 자동으로 이월금

<b>사회민주당중앙당후원회</b>					
<b>[이월금]</b>		1,035,962			
<b>[후원금]</b>	3,000,000	6,272,843	(3,272,843)	209.1%	
<b>수입(후원금) + 이월금</b>	50,000	7,308,805	(3,272,843)	181.1%	
<b>[기본경비]</b>	50,000	550,500	(500,500)	1101.0%	
(세금)					
(관리유지비)	50,000	550,500	(500,500)	1101.0%	회계감사비용 지출
<b>[후원금 반환]</b>		-			
<b>[후원금 정당 귀속금 이전]</b>	-	-	-		
<b>지출합계</b>	50,000	550,500	(500,500)	1101.0%	
<b>잔액</b>	-	6,758,305			*잔액은 자동으로 이월금

정당 및 후원회 정치자금 잔액 총액(참고)	58,290,938	*정당 정치자금 잔액과 후원회 정치자금 잔액을 합산한 총액(참고용)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 2026년도 1/4분기 (1월 1일~3월 31일) 수입지출내역 및 2/4분기 예산안 검토 결과

1. 검토근거: '당헌 제35조(예산결산위원회)와 제41조(예산과 결산의 회계)'에 근거하여 2026년 1/4분기 회계 감사와 2/4분기 예산안 검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.
2. 감사시기 :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(19:00)
3. 피감기관 : 중앙당
4. 감사방법 : 수입/지출내역 자료 검토 및 회계 실무자 면담  
(사무총장 김보경, 부총장 고문석, 양윤찬, 참관 : 황일진 강남3구위원장)
5. 검토자 : 예산결산위원 송명호(위원장), 박명준 위원
6. 검토 의견
  - ① 갑종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(3.3%징수)는 당사자에게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대납하는 것이므로 세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인건비 또는 지급되는 금액에 포함해서 집행하기 바랍니다.
  - ② 인천시당 및 부산시당 창당과 같이 당의 주요 사업이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를 소집해 검토를 받아 집행하여 원활한 당 운영 및 지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③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후보 출마 지역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9일

사회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 명 호(직인 생략)